

의안번호	2207425
의 퇴 인	양부남의원
회 답 일	2025.2.14.
추 계 번호	25D0170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조치와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2,133억 5,300만원 (연평균 426억 7,100만원)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조치	40,461	38,087	38,842	39,614	40,398	197,402	39,480
유전자검사 실시	5,264	2,594	2,645	2,697	2,751	15,951	3,190
합계	45,725	40,681	41,487	42,311	43,149	213,353	42,671

주: 본 추계는 재정수반요인 중 추계가 가능한 재정수반요인에 한하여 추계한 결과로 향후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6조제2항 (신고 접수 및 조치)	경찰관서의 장은 피신고인의 실종성인 해당 여부나 신고의 진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종성인정보시스템을 통한 자료 조회, 주변 인물 등으로부터의 진술 청취, 현장 탐문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의무규정
2	안 제10조제1항 (유전자검사의 실시)	경찰청장은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하여 실종성인을 찾고자 하는 가족, 실종성인과 관련된 물건 또는 장소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유전자검사대상물의 채취를 실시할 수 있음	재량규정
3	안 제16조제4항 등 (실종성인의 복귀 및 지원)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심신미약 등 정신상의 이유 이외에 다른 사유로 신고인에 대한 통보를 거절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경찰관서의 장은 실종성인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자살예방센터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음	재량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6조제2항 (신고 접수 및 조치)	○	-
2	안 제10조제1항 (유전자검사의 실시)	○	-
3	안 제16조제4항 등 (실종성인의 복귀 및 지원)	X	발견된 실종성인 중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상담 지원, 자살예방센터의 지원이 필요한 인원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워 추계 곤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본 추계는 제정안에 따른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조치, 유전자검사 실시에 한하여 추가재정소요 추계
- 추계에서는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조치로 수색·수사를 위한 경찰공무원 인력증원, 유전자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증원 및 유전자검사 실시비용을 산정하며, 그에 따른 사무공간 증축, 사업비 등은 고려하지 않음
-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조치를 실종아동등에 준하여 실시한다고 가정하고,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실종신고건수와 즉각대응활동, 1년 이상 장기실종사건의 처리 등을 고려하여 경찰공무원의 신규증원인력 수를 산정함
 - 경찰청의 의견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개정으로 개인위치정보·IP주소, CCTV, 신용·교통카드, 의료기록 등 조회가 영장 없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소요되는 업무 경감분을 반영하여 증원인력의 60%를 고려함

- 신규증원인력은 실종자에 대한 즉각대응활동 수행을 위한 경찰서 실종팀 순경급 인력 증원, 1년 이상 장기실종사건을 담당하는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경위급 인력 증원으로 가정함
- 유전자검사 실시의 경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제출한 자료에 근거하여 연구직공무원의 신규증원인력 수를 산정하고, 유전자검사 건수는 실종아동등의 실종신고 건수 대비 유전자검사건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의견에 따르면,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실시로 유전자검사건수의 증가가 예상되어 21명의 연구직공무원 증원이 필요함
 - 추계에서는 2024년 예산편성 유전자검사실시 비용을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0월)한 소비자물가상승률¹⁾을 적용하여 산정함
- 제정안 부칙은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추계기간은 2026~2030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최근 5년간 평균 실종성인 신고건수는 71,817건으로 전체 실종신고 대비 62.1%를 차지하고 있음

[표 2] 실종신고 현황: 2019~2023년

(단위: 명,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실종아동 등	소계 (비율)	42,390 (36.0)	38,496 (36.3)	41,122 (38.3)	49,287 (39.7)	48,745 (39.4)	44,008 (37.9)
	18세 미만 아동	21,551	19,146	21,379	26,416	25,628	22,824
	지적·자폐성·정신장애인	8,360	7,078	7,166	8,344	8,440	7,878
	치매환자	12,479	12,272	12,577	14,527	14,677	13,306
실종성인(가출인) (비율)		75,432 (64.0)	67,612 (63.7)	66,259 (61.7)	74,936 (60.3)	74,847 (60.6)	71,817 (62.1)
합계		117,822	106,108	107,381	124,223	123,592	115,825

자료: 경찰청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2024.7)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1%	2.0%	2.0%	2.0%	2.0%	2.0%

나.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조치(안 제6조)

-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조치의 증가에 따라 경찰공무원 필요 인력 증가로 추가재정소요 발생이 예상됨
 -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조치는 즉각적인 대응과 장기실종수사 등 두가지 형태로 진행되며, 즉각적인 대응 증가로 인한 경찰서 실종팀 인력 증원, 장기실종수사 증가로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인력 증원 필요
- (즉각 대응 인력 증원) 즉각적인 대응의 경우, 현행법에 따르면, 실종성인의 단순가출, 행방불명, 연락두절의 경우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추정할 특별한 징후를 발견치 못한 경우에는 추가 단서확보 시까지 개인위치정보 조회가 불가능한 반면, 실종아동등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위치정보 조회 등을 적극 활용하여 즉각적인 대응조치를 취함
 - 제정안에 따르면, 실종성인의 단순가출, 행방불명, 연락두절의 경우도 실종아동등과 같은 실질적인 위치추적이 가능함에 따라 즉각대응건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경찰서 실종팀의 인력증원 필요가 예상됨
 - 경찰청에 따르면, 실종아동등 신고건수 대비 즉각대응건수 비율은 13.7%인 반면, 실종성인 신고건수 대비 즉각대응건수 비율은 1.9% 수준임
 -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즉각대응건수와 실종성인에 대한 즉각대응건수를 합하면, 평균 7,398건임

[표 3] 실종아동등의 실종신고건수 대비 즉각대응건수 현황: 2019~2023년

(단위: 건,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평균	비율
실종아동등 실종신고	42,390	38,496	41,122	49,287	48,745	44,008	100.0
실종아동등 즉각대응건수(A)	4,617	4,284	7,998	6,410	6,756	6,013	13.7
실종성인 실종신고	75,432	67,612	66,259	74,936	74,847	71,817	100.0
실종성인 즉각대응건수(B)	1,868	1,307	1,302	1,221	1,227	1,385	1.9
즉각대응건수 합계(A+B)	6,485	5,591	9,300	7,631	7,983	7,398	-

자료: 경찰청

- 최근 5년간 실종성인 실종건수 평균을 추계기간 실종성인 발생건수로 가정하고,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의 실종신고 건수 대비 즉각대응건수 비율(13.7%)을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실종성인의 즉각대응건수를 추정

[표 4] 실종성인의 즉각대응건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건, %)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평균	비율
실종성인 실종신고	71,817	71,817	71,817	71,817	71,817	71,817	100.0
실종성인 즉각대응건수	9,813	9,813	9,813	9,813	9,813	9,813	13.7

자료: 경찰청

-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의 실종신고 건수 대비 즉각대응건수 비율(13.7%)을 적용하여 실종성인의 즉각대응건수를 추정

[표 5] 제정안에 따른 실종성인의 즉각대응건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건)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평균
제정안에 따른 실종성인 즉각대응건수(A)	9,813	9,813	9,813	9,813	9,813	9,813
현행 실종성인 즉각대응건수(B)	1,385	1,385	1,385	1,385	1,385	1,385
추가 실종성인 즉각대응건수(A-B)	8,428	8,428	8,428	8,428	8,428	8,428

자료: 경찰청

- 2024년 기준 경찰서 실종팀 경찰공무원 정원은 706명이며,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과 실종성인을 모두 포함한 즉각대응건수는 평균 7,398건으로 경찰공무원 1인당 연간 처리 사건수는 10.5건임
- 추가 실종성인 즉각대응건수 8,428건을 경찰공무원 1인당 연간 처리 사건수 10.5건으로 나누어 신규증원인력을 산정

[표 6] 실종성인 즉각대응에 따른 신규증원인력규모 추정

(단위: 건, 명)

경찰서 실종팀 정원	즉각대응건수	1인당 사건수	추가 실종성인 즉각대응건수	신규증원인력
706	7,398	10.5	8,428	482

주: 경찰청의 의견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개정으로 개인위치정보·IP 주소, CCTV, 신용·교통카드, 의료기록 등 조회가 영장 없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소요되는 업무 경감분을 반영하여 증원인력의 60%를 고려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장기실종 전담인력 증원) 1년 이상 장기실종사건 중 사고가 의심되는 사건의 경우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되어 집중수사 대상이 됨
- 1년 이상 실종아동등 사건 중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로 이관된 사건은 734건으로 약 53.7%를 차지

[표 7] 1년 이상 실종아동에 대한 형사기동대 이관 현황(2024년 3월 말 기준)

(단위: 건, 명, %)

1년 이상 실종아동 사건(A)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이관(B)	비율(B/A)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실종사건 전담인력(C)	전담인력 1인당 사건 수 (B/C)
1,368	734	53.7	53	13.8

자료: 경찰청

- 1년 이상 실종아동사건 건수 대비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이관 비율 53.7%를 적용하여, 1년 이상 실종성인 건수 중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이관 사건을 추정하면 3,217건임
- 형사기동대의 전담인력 1인당 사건수 13.8건을 적용하여 신규증원인력을 산정

[표 8] 1년 이상 실종성인 집중수사에 따른 신규증원인력규모 추정

(단위: 건, 명, %)

1년 이상 실종성인(A)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이관 비율(B)	시도경찰청 형사기동대 이관(C=A*B)	전담인력 1인당 사건 수 (D)	신규증원인력 규모 (C/D*0.6)
5,995	53.7	3,217	13.8	140

주: 경찰청의 의견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개정으로 개인위치정보·IP 주소, CCTV, 신용·교통카드, 의료기록 등 조회가 영장 없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견에 소요되는 업무 경감분을 반영하여 증원인력의 60%를 고려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신규증원인력) 이상과 같이, 실종성인 즉각대응에 따른 신규증원인력 482명(순경)과 1년 이상 장기실종성인 집중수사에 따른 신규증원인력 140명(경위) 등 총 622명에 대한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추정
- (인건비 단가) 2024년 기준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무원임금상승률 1.9%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인건비 단가를 추정

[표 9] 경찰공무원 인건비 단가: 2024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순경	경위
인건비	41,820	68,090

자료: 2024년 계급별 예산편성단가로, 봉급,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등을 포함

자료: 경찰청

[표 10] 경찰공무원 인건비 단가: 2026~2030년

(단위: 천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순경	43,425	44,250	45,091	45,948	46,821
경위	70,702	72,045	73,414	74,809	76,23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등)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산정
 -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0월)한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정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7.0%²⁾을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산출
 -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여, 2026년 622명에 대한 자산취득비 산출

[표 11] 경찰공무원 인건비등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30,829	31,415	32,012	32,620	33,240	160,116
기관부담금	4,073	4,180	4,289	4,402	4,515	21,459
기본경비	2,443	2,492	2,541	2,592	2,643	12,711
자산취득비	3,116	-	-	-	-	3,116
합계	40,461	38,087	38,842	39,614	40,398	197,402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총인건비는 262억 9,171만원, 기본경비는 18억 2,762만원으로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비율은 7.0%임

다. 유전자검사 실시(안 제10조)

- (검사대상) 최근 5년간 실종아동등 중 유전자채취 비율 평균 2.8%를 적용하여, 향후 예상되는 실종성인 유전자채취 건수를 추정

[표 12] 실종아동등 중 유전자채취건수: 2019~2023년

(단위: 명, %)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실종아동 등	42,390	38,496	41,122	49,287	48,745	220,040
유전자채취건수	1,808	816	741	1,174	1,663	6,202
비율	4.3	2.1	1.8	2.4	3.4	2.8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실종성인 수는 2021년까지 감소하였다가 2022년 이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실종성인 수는 최근 5년간 평균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이 중 2.8%에 대해 유전자검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
 - 법이 처음 시행되는 2026년에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성인 6,786건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전자검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표 13] 실종성인에 대한 유전자검사 실시 건수 추정: 2026~2030년

(단위: 명, %)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실종성인 수	71,817	71,817	71,817	71,817	71,817	359,086
실종성인 유전자채취건수(명)	8,797	2,011	2,011	2,011	2,011	16,840
비율	12.2	2.8	2.8	2.8	2.8	4.7

주: 2026년 유전자채취건수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성인 6,786건을 포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검사인력 증원)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실시로 유전자검사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검사인력으로 21명의 연구직공무원 증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경상경비를 추정
- 실종성인 유전자검사 건수가 2026년에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은 실종성인을 포함하고 있어 높을 것으로 예상되나, 연구직공무원 증원 규모 산정시 이를 별도로 고려하지 않아 향후 실제 증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음

- (인건비 단가) 2024년 기준 인건비 단가에 최근 3년간(2022~2024년) 공무원임금상승률 1.9%를 적용하여 추계기간의 인건비 단가를 추정

[표 14] 연구직공무원 인건비 단가: 2024년 기준

(단위: 천원)

구분	연구사	연구관
인건비	56,390	87,280

자료: 2024년 계급별 예산편성단가로, 봉급,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정근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등을 포함

자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표 15] 연구직공무원 인건비 단가: 2026~2030년

(단위: 천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연구사	58,553	59,666	60,800	61,955	63,132
연구관	90,628	92,350	94,105	95,893	97,715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인건비 등) 인건비를 기준으로 기관부담금, 기본경비, 자산취득비를 산정
- 인건비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2024.10월)한 기관부담금 요율을 적용하여 기관부담금을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 비율 9.8%³⁾을 적용하여 기본경비를 산출
 -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정부기관 1인당 자산취득비를 적용하여, 2026년 21명에 대한 자산취득비 산출

[표 16] 연구직공무원 인건비등 추계: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인건비	1,422	1,449	1,477	1,504	1,533	7,385
기관부담금	188	193	198	203	208	990
기본경비	158	161	164	167	171	821
자산취득비	105	—	—	—	—	105
합계	1,873	1,803	1,839	1,874	1,912	9,30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총인건비는 376억 1,800만원, 기본경비는 36억 9,800만원으로 인건비 대비 기본경비비율은 9.8%임

- (검사비용) 앞서 추정한 검사대상에 검사단가를 곱하여 검사비용을 산출하며, 이때 검사단가는 채취키트 단가 3,080원, 분석시약 단가 358,000원(국립과학수사연구원 자료, 2023년 기준)에 국회예산정책처가 전망한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하여 산정
- 분석시약단가 358,000원 = 2023년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검사 시약예산 5억 2,000만원 ÷ 검사건수 1,615건 + 36,000원(추가분석비용)

[표 17] 유전자검사 단가 추정: 2026~2030년

(단위: 원)

	2026	2027	2028	2029	2030
유전자 채취키트	3,288	3,354	3,421	3,489	3,559
유전자 분석시약	382,149	389,792	397,588	405,540	413,650
합계	385,437	393,146	401,008	409,029	417,20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실종성인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66억 4,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됨

[표 18] 유전자검사 증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실종성인 유전자채취건수(명)	8,797	2,011	2,011	2,011	2,011	16,840
유전자검사단가(원)	385,437	393,146	401,008	409,029	417,209	-
추가재정소요(백만원)	3,391	791	806	823	839	6,649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 (유전자검사 실시비용 추계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 증원과 유전자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비용을 합하여 산정

[표 19] 실종성인에 대한 유전자검사 실시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정: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 증원	1,873	1,803	1,839	1,874	1,912	9,301
유전자검사 증가에 따른 실시비용	3,391	791	806	823	839	6,649
합계	5,264	2,594	2,645	2,697	2,751	15,950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라. 추계결과

- 제정안에 따라, 실종성인의 발견을 위한 조치와 유전자검사를 실시할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2030년까지 2,133억 5,300만원(연평균 426억 7,1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0] 추가재정소요

(단위: 백만원)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조치	40,461	38,087	38,842	39,614	40,398	197,402	39,480
유전자검사 실시	5,264	2,594	2,645	2,697	2,751	15,951	3,190
합계	45,725	40,681	41,487	42,311	43,149	213,353	42,671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실종성인 발견을 위한 조치에 따른 경찰공무원 인력증원, 유전자검사 건수 증가에 따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인력증원 및 검사실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계하였으며, 그에 따른 사무공간 증축, 사업비 등은 고려하지 않아 실제 추가재정소요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의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행정비용추계과	이미연	김안나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미연	02-6788-4661	mylee@assembly.go.kr